

### 제1조 용어의 정의

- ‘부스참가자’ 라 함은 본 행사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을 하고 부스참가비를 납부한 기관/기업을 말한다.
- ‘행사’ 라 함은 ‘2020 NPO 파트너 페어’ 를 말한다.
- ‘주최자’ 라 함은 ‘서울특별시’ 와 ‘서울시NPO지원센터’ 를 말한다.
- ‘부스비’ 라 함은 추가 부대시설 비용을 제외하고, 부가가치세를 불포함하는 비용을 말한다.

### 제2조 부스참가자 선정 및 부스 배정

- 부스선정은 행사취지 적합성, 행사준비 적극성, 사무국 소통, 관람객 평가 등을 기준으로 하되, 행사의 원만한 구성과 진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주최자의 판단에 의해 참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.
- 주최자는 참가신청 순서, 부스참가비 입금순서, 참가규모, 부스분야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행사 내 각 부스의 위치를 결정한다.
- 주최자는 전시장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하여, 전반적으로 전시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참가자에게 기 배정된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, 참가자는 부스 변경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### 제3조 부스참가비 납부절차 및 서류제출

- 부스참가비는 해당 부스 기준으로 60만 원이며, 부가세는 별도이다. 부스참가비에는 부스설치, 간판 및 간판조명, 바닥 파인텍스, 전기콘센트, 테이블 및 의자 등이 포함되며 4월 30일(목) 전에 조기신청한 곳은 부스당 50,000원 할인혜택이 적용되며, 기존 3회를 모두 참여한 곳은 부스당 100,000원 할인, 기존 1회~2회 참가자는 부스당 50,000원 할인혜택이 적용된다. 위의 할인 혜택은 중복 적용 가능하다.
- 부스참가자는 인보이스 확인 후 조기신청은 **5월 18일(월)까지**, 일반신청은 **6월 16일(화)까지** 부스참가비를 운영대행사인 주식회사 플랜아더 계좌로 전액 납입하여야 하며, 부스관련 제출서류는 부스참가자 설명회 참석 이후 사무국에서 지정한 날짜까지 NPO 파트너 페어 사무국 웹하드로 제출해야 한다.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부스참가자가 감수해야 한다.
- 주최자는 참가비 입금에 대한 증빙을 입금월의 익월 초 (1일~10일) 까지 발행한다.
- 참가비 입금에 대한 증빙 발행 후 취소 및 수정 재발행 가능 기간은 증빙 발행월 이내에만 가능하다.
- 부스참가비 입금계좌 : 주식회사 플랜아더 / 케이뱅크 700-106-200002

### 제4조 설치 및 철거

- 부대시설 및 기본부스 장치공사는 부스참가자의 신청에 따라 주최자가 제공하며, 신청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부스참가자가 책임을 진다.
- 부스참가자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, 진열을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, 2020년 10월 20일(화) 오전 9시까지 전시품 진열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해당 부스참가자를 임의 취소할 수 있으며,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장치를 위한 전시장 사용시간은 2020년 10월 19일(월) 오후 20시~21시, 10월20일(화) 07시 30분 -09시 30분이며 규정 시간 외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최소 2주 전까지 주최 측에 문의하여 추가사용 신청 및 시간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부스참가자는 전시 종료 후, 2020년 10월 21일(수) 오후 18시부터 19시까지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부스참가자의 반출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손상으로 주최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(전시장 추가사용료 등)에 대하여 주최자에 보상하여야 한다.
- 부스참가자는 전시실의 바닥, 천장, 기둥,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전시장의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.

### 제5조 보험, 보안 및 안전

- 주최자는 부스참가자 및 관람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 (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대관규약에 의거)를 취한다.
- 부스참가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설비 및 전시품의 도난, 파손, 분실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을 부모할 수 있다.
- 주최자는 부스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 등 적절한 경계조치를 제공하지만, 부스참가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부스참가자 스스로에게 있으며, 도난, 파손, 분

실 등에 대한 책임은 부스참가자 스스로가 부담한다.

- 주최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시공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 있다.
- 부스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, 도난, 파손,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스참가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고, 모든 기자재 및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부스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.

#### 제6조 주최자에 대한 정보제공

- 부스참가자는 주최자가 부스 내 설치 및 운영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부스운영계획서 및 사무국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물론 행사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#### 제7조 전시 및 홍보활동

- 부스참가자는 부스운영계획서 상에 기재한대로 부스를 운영하고 전시해야 하며 전시회 운영시간을 지켜야 한다.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부스를 비워두는 등 관리에 소홀할 경우 주최자는 부스참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반드시 상주요원을 배치하되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.
- 주최자는 행사의 성격과 배제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주최자의 별도 허가 없이 전시장내 호객 및 홍보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.
- 기타 지나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시품의 전시여부는 사전에 주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 만약 지나친 소음 또는 주변부스의 홍보 활동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에 주최자는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부스 참가자는 요청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.
-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부스참가자는 주최자의 사전승인 없이 임대한 전시면적 외에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.

#### 제8조 부스참가 취소 및 규모축소에 따른 위약금

- 부스참가자는 부스참가비 납부 이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 위약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다.

2020년 6월 17일(수) 18시 이전 취소 : 위약금 없음

2020년 7월 31일(월) 18시 이전 취소 : 위약금 발생(산정된 부스참가비 \* 50%)

2020년 7월 31일(월) 18시 이후 취소 : 위약금 발생(산정된 부스참가비 \* 100%)

- 단, 부스참가자가 신청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부스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, 6월 17일(수) 사전설명회에 불참할 경우, 행사의 추진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주최자가 일방적으로 부스참가를 해지할 수 있으며 부스참가비 환불에 관한 사항은 '주최자'의 결정에 따른다.
- 부스참가자의 참가 취소는 다음번 행사 진행시, 선정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.

#### 제9조 행사 취소, 변경

- 주최자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#### 제10조 규정준수 및 보충규정의 제정

-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, 부스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부스참가자는 주최자의 모든 참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최자가 정한 관계규정과 주최자가 적용하는 관계법규에 따른다.
- 본 규정에 대하여 주최자와 부스참가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최자의 해석에 따른다.

#### 제11조 분쟁해결

-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부스참가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며,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.

#### 제12조 청렴계약 이행

- 주최자와 부스참가자는 본 규정과 관련하여 접대나 금품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직/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되며,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 및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.